	미디어센터운영위원회 규정	제 정 일	2008. 1. 1
		개 정 일	2009. 2.13
		개정차수	1차
		담당부서	미디어센터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가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다.

제 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디어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09. 2.13)

③ 위원은 동서울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3조 (위원장)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4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콘텐츠 내용 평가
2. 미디어센터 운영 및 콘텐츠 수집 전략 수립
3. 콘텐츠 확보 및 관리 계획
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제 5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학기별로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조 (회의록)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
제 7조 (사무관장) 위원회의 사무는 미디어센터에서 관장한다.

제 8조 (간사)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 간사는 미디어센터 직원이 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